

3. 종합시험 시행세칙

제정 1994. 4. 1

개정 2010. 3. 1

개정 2014. 3. 1

개정 2015. 4. 8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학칙 제32조에 의거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외국어시험 <폐지>

제3장 종합시험

제10조(응시자격) ① <폐지>

② 3학기동안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취득 및 취득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.00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3학기 동안에 개설된 종합시험 해당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실시시기) 종합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.

제12조(응시절차)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행정 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험과목) 시험과목은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4조(출제범위)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제15조(출제위원) 출제위원은 부원장이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6조(합격기준) 종합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본다.

제17조(재 응시)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최초 응시학기부터 4학기 내에 합격하여야 한다.

제18조(논문제출 및 졸업 요건)

①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학점이수로 졸업하고자 하는 원생은 졸업학기까지 종합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졸업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일)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개정일) 본 개정세칙(제12조 제1항)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개정일) 본 개정세칙(제18조)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.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세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성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.

제5조(개정일) 본 개정세칙(제18조 제1항)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